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56

발의연월일: 2021. 8. 6.

발 의 자: 송옥주・양정숙・이병훈

김홍걸 · 홍성국 · 박성준

김경만 • 진선미 • 임종성

윤건영 • 민형배 • 안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 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 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심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범죄경력자료 외에도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정보
- 2. 가족관계등록정보
- 3. 범죄경력자료
- 4.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 5. 그 밖에 국적상실, 군복무 경력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5조제4항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	안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나
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	<u>1. 주민등록정보</u>
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	2. 가족관계등록정보
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3. 범죄경력자료
<u>있다.</u>	4.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5. 그 밖에 국적상실, 군복무
	경력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